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이상훈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서울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형에서 사회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, 사회주택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소통·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.
- 이에 사회주택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,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며,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위촉직 위원에 사회주택 사업자와 입주자를 선정토록 하여, 사회주택 위원회의 운영과 민간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오니

동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여 주셔서
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
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